

1. 개정이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제1항 삭제)

- 1)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 (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 제한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활하중

2의2. 지붕활하중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설계하중)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적재하중(활하중)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3.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설계하중) ①----- ----- -----. 1. (현행과 같음) 2. <u>활하중</u> 2의2. <u>지붕활하중</u> 3.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u>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u> ② <u>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u>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 <u>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u>